

CA0027153

영구

1981 - 1981

질의회답(2)(1981년6월24일-10월28일)(2-1)



서류발행일:
2019년11월01일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원본대조필

국가기록원 보존문서(원본, 광디스크, 마이크로필름)
원본으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국가기록원장



보 건 사 회 부

수급 1447-1069

(70-3723)

1981. 5. 16.

수신 법무부장관

제목 유네스코쿠폰 수입에 관한 유권질의

1. 우리나라는 1961년 8월 유네스코쿠폰 (이하 쿠폰 이라한다) 제도에 가입하였으며 매년 정부의 연간 추정액에 따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처에서 서적쿠폰, 과학기재쿠폰 및 교육영화쿠폰으로 구분하여 배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바,

2. 근간 일부종합병원에서 의약품이 제항되는 진단용시약을 국내 오판상을 통하여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함에 있어 약사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수입등록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과실

○ 의약품인 진단용시약을 유네스코쿠폰으로 수입코자 하는 경우 유네스코쿠폰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과 약사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득하여야 함.

원사유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특별법인 약사법에 적용되므로 유네스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쿠폰과 교환으로 송부되어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약사법상 면제규정이 없기 때문임.

임무실장

1991. 5. 10

이 집 사서방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10-2103)

1991. 5. 10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집 사서방의 임무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을 설

○ 의약품인 진단용시약의 경우에도 무역거래법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제24항 규정에 의하여 타법령에 불구하고 자동승인품목으로 수입할수 있음.

○ 사유

무역거래법은 무역에 관한 특별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수입제한 예제는 타법령에 의한 수입허가 규정에 불구하고 우선 적용되므로 무역거래법상 수입의 특례에 해당되는 의약품인 진단용시약에 있어서는 약사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임.

다. 당부의견 :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첨부 : 참고자료 1부. 끝.

보 건 사 회 부 장 관

본 건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의하여
결정된 것임. (인) 권 전 결

第2編 유네스코 쿠폰 業務 關係法規拔萃

◎ 유네스코 쿠폰에 관한 規程(文號 1975.3.12 第140-24號)
(1971.9.14 第17007-25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 的) 이 規程은 유네스코 活動에 관한 法律 第25條
에 規定에 따라 유네스코 쿠폰(이하 "쿠폰"이라 한다)의 規定
및 쿠폰으로 購入하는 物品에 대한 購買契約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適用範圍) 쿠폰 規定 및 購買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規定이 無한 場合 除外하고는 이 規程의 規定이 適用된다

第3條 (定 義) 이 規程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
項과 같다.

1. "購入代行商社"라 함은 유네스코 購買委員會 事務處(以下 "事務處"라 한다)와의 購買契約에 依하여 쿠폰으로 購入 物品을 代行하는 者를 指한다.
2. "他商社"라 함은 購入代行商社 以外의 商社로서 物品의 發行에 關하여 發行을 業으로 하는 者를 指한다.
3. "購入通關費"라 함은 購入代行商社가 稅關에 申報된 物品의 運送에 關하여는 運費(運送代手費料, 得稅當り場內 保稅料, 港灣荷役料 및 荷役費를 合算한 것)과 貨物通關稅과

- 지 還拂하는에 所拂하는 經費를 말한다.
4. "其他地域"이라 함은 日本地域을 除外한 地域을 말한다.

第2章 유네스코 쿠폰 配定審査委員會

第4條 (設 置) 쿠폰의 配定에 관한 事項을 審議·決定하기 爲하여 유네스코 委員會議內에 유네스코 쿠폰 配定審査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3章 쿠폰配定

第12條 (쿠폰의 種類) 쿠폰은 유네스코 쿠폰 配定 加入約定文書에 따라 다음과 같이 區分한다.

1. 書籍쿠폰
2. 科學圖書쿠폰
3. 教育映寫機쿠폰

第13條 (쿠폰配定의 取消 또는 取消) 쿠폰을 配定받은 者가 이 쿠폰 他人에게 賣渡 또는 讓渡하였을 때에는 그 配定을 取消한다. 一定한 期間을 定하여 쿠폰을 配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14條 (手續費) 쿠폰配定에 대하여 申請하는 者는 申請手續費를 納할 수 있다. 다만, 配定手續費는 配定額의 10%를 超過할 수 없다.

第15條 (書籍쿠폰) ①書籍쿠폰은 各圖書館, 圖書館, 教育, 科學, 文化, 弘報分野의 機關 및 公共團體가 이 分野의 個人의

에 配定한다.

② 科學研究은 다음 各款에 配定하는 範圍에서 費用할 수 있다.

1. 學科圖書(雜誌)의 購入
2. 科學實驗 器材의 購入 및 修理의 費用
3. 실험 地盤 및 地租의 購入
4. 試料 및 試料으로 廢棄物의 購入

○ 第16條 (科學器材 專章) ① 科學器材 專章은 各款에서 12公升의 容量의 瓶 및 試料 容器를 公共研究機關에 配定한다.

② 科學器材 專章은 科學研究, 科學教育, 科學普及, 科學宣傳, 科學 普及 宣傳에 關한 費用을 公共研究機關에 配定하는 範圍에서 科學 器材의 購入, 修理 및 試料의 購入, 修理, 試料의 購入, 修理, 試料의 購入, 修理 등으로 配定하여 公共研究機關에 配定하는 範圍에서 科學 器材의 購入과 科學器材의 修理 및 試料의 購入을 위한 費用은 優先적으로 한다.

③ 科學器材 專章에 依한 器材의 購入은 다음에 配定되어 있는 各款의 器材에 限하여 公共研究機關에 配定하는 範圍에서 公共研究機關에 依한 費用을 支出하여야 한다.

1. 科學研究教育 및 科學普及에 用되는 器材
2. 科學研究 器材
3. 各樣 試料 및 試料
4. 試 料

○ 第17條 (教育器材 專章) ① 教育器材 專章은 各款에서 1公升의 容量의 瓶 및 試料을 公共研究機關에 配定한다.

② 教育器材 專章에 依한 器材 및 試料의 購入은 다음에 配定되어

어 있는 種類라야 한다.

1. 教育, 科學, 文化, 社會, 經濟을 進하여 教育的 效果를 證明하기 爲하여 發行된 書籍인 教育映畫
 2. 雜情한 教育映畫 및 文化映畫를 製作支拂하기 爲한 坐落金
- 第18條 (物品輸入) 申請의 配定에 合한 物品의 輸入은 申請者로 共同委員會의 共同輸入을 原則으로 하되, 委員會는 特別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時 共同輸入을 解除하고 配定받은 者가 直接 輸入하게 할 수 있다.

第4章 節 次

第19條 (申請) 申請者가 申請을 提出한 後는 다음 各號와 같이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① 書籍申請은 申請書(別紙 第1, 2, 3號 形式)에 輸入代行者社의 同行의 目的 또는 申請 內容을 證明할 수 있는 證書를 添附하여야 한다.

② 科學器材申請은 申請書(別紙 第4號 形式)에 物品의 種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다만, 輸入代行者社가 아닌 科學社의 物品의 種類의 資料를 採擇하였을 時에는 輸入代行者社를 添附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第20條 (配定通知) 委員會에서 申請의 配定을 決定하였을 時에는 그 決定된 事項을 申請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第21條 (抄入) ① 申請者는 前條에 의한 配定通知를 收受하였을 時에는 30일 以內에 抄入告知書(別紙 第5, 6, 7號 形式)에

然るに買入代金と手取料を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買入手取料中의 買入代金은 手取料만 納入한 後 申請書가 批准 手取料을 買入하여야 한다.

買入申請書가 批准 後 申請의 決定에 依한 期日內에 買入代金 및 手取料을 買入하지 아니할 情事가 生 ずれば 申請書가 14日 手取料의 決定을 中止할 수 있다.

第22條 (買入) ① 申請書는 申請書의 手取料 買入代金 및 手取料의 納入이 完了하면 買入代金 納入에 關한 買入代行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買入代行者가 手取料을 買入함에 있어 韓國外銀銀行에 支拂하는 手取料은 申請書의 負擔으로 한다.

第23條 (資金・設備) 買入代行者는 業務을 爲하기 爲한 資金 및 設備을 具備한 後 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第24條 (資金・設備) ① 買入代行者는 申請書 提出時에 對하여 申請書에 必要한 金額을 充당하여 申請書에 證明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買入代行者는 定期限 物品을 買入할 時에 納品하고 檢收를 받아야 한다.

③ 定期 限內 運送에 必要한 總費用은 買入代行者가 負擔한 輸入運送費로 負擔한다.

第25條 (損害賠償) ① 買入代行者가 定期 또는 納品함에 있어 瑕疵가 있을 事에 對하여는 이를 申請書와 貨物運送單에 報告하고 이에 對한 損害契約이 締結된 保險會社에 求償을 請求하여

야 한다.

②輸入代行商社가 保險會社로 부터 保險金을 受領하면 取扱發生物品을 引渡하여 檢査하여야 한다.

第5章 契 約

第25條 (증권購買契約) 증권에 의한 外貨購買契約는 証券外貨購買契約를 輸入代行契約의 組合契約로 하여야 한다. 다만, 該項증권은 該項에 依하여야 한다.

①증권外貨購買契約의 券種으로 送金·發注하는 金額은 規定金額으로 하는 供給契約를 締結하여야 한다.

②輸入代行契約는 銀行(日本地内に 限る) 및 供款料를 規定金額으로 約定하여 結成이 發生하였을 後에는 該項 供款料를 用發契約를 締結하여야 한다.

第27條 (증권購買價格) 증권에 의한 外貨購買價格은 運賃保險料包含價格(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으로 한다.

第28條 (契約金額의 表示) 증권에 의한 購買契約의 契約金額은 貨物의 價額을 通貨(US\$)로 表示한다.

第29條 (증권外貨購買契約의 金額) 증권에 의한 購買契約의 金額을 締結할 時에, 証券外貨購買契約의 決定의 基準金額은 實價로 証券을 送金·發注하는 金額으로 한다.

第30條 (증권發注 및 送狀金額) 証券으로 發注하는 金額과 送狀金額은 日本地内に 在하는 本埠引渡價格(FOB; Free on Board)으로, 其他地帶은 運賃包含價格(C&F; Cost and Freight)

으로 한다.

第31條 (運賃) 日本郵政公社輸入代行商社가 支拂하는 運賃은 日本郵政公社에 對하여는 運賃은, 其他地에서는 本國으로 轉지.

日本郵政公社가 該社通關社에 支拂하는 日本郵政公社 輸入 代辦 物品에 對한 日本郵政公社 運賃은 運賃으로 算하여 轉지.

第32條 (保險) 日本郵政公社 保險料을 輸入代行商社에 運賃으로 支拂하는 日本郵政公社에 對하여는 日本郵政公社에 對하여는 轉지.

日本郵政公社는 全危險原因(A/R: All Risks) 및 內陸運送延長 補償(ITE, Inland Transit Extension)에 對하여는 轉지. 保險料은 日本郵政公社에 對하여는 日本郵政公社에 對하여는 轉지.

第33條 (運賃・保險料의 不足) 運賃 및 保險料가 實際發行額 에 對하여 不足이 있는 場合에는 不足 補償하여야 轉지.

第34條 (入札掛金) 日本郵政公社에 依한 物品을 購買하기 爲한 入札 金 總額이 200만 圓을 넘는 日本郵政公社 100분의 2以上의 保證金 을 提出 또는 引渡로 履行하여야 轉지.

第35條 (入札掛金) 日本郵政公社에 依한 物品을 購買하기 爲한 入札 金 總額이 200만 圓을 넘는 日本郵政公社 100분의 5以上의 保證金 을 提出 또는 引渡로 履行하여야 轉지.

第36條 (保證保證書) 日本郵政公社에 依한 物品을 購買하기 爲한 入札 參加者 또는 契約締結者가 入札 또는 契約保證金이 不足하여 保證保證書로 代替할 轉지.

第37條 (運賃債主) 日本郵政公社에 依한 物品購買契約締結者가 契約發行 額을 超過한 場合에는 日本郵政公社 每日에 對하여 契約金額의 1,000분의 1에 相當하는 運賃債金을 履行하여야 轉지.

© 외국환관리규정 (1978. 12. 15. 재무부 고시 제827호)

제11-6조 (유네스코·쿠폰) 유네스코 쿠폰은 한국의 환은행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관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유네스코 쿠폰을 매입받은 자에게 대각하며 그 대각대금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외지급 수단으로 정산한다.

1. 외국인정관 수입세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 장기저축권 수입납자가 아닌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기용의 외국 서적·정기간행물 기타 도서의 구입이나 주주에 따른 배금 또는 구복표의 지급

✓ 2. 연구·실업·교육용의 과학기술의 수입에 따른 배금의 지급

제9-3조 (수출징산결제방법) ① 수출징산 결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물품의 수출대금의 전액을 유네스코 쿠폰으로 영수하는 방법

제9-4조 (수입징산결제방법) 수입징산 결제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5. 한국의 환은행에서 매입한 유네스코 쿠폰을 외국에 송부함으로써 물품의 수입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방법

◎ 貿易法 (1957. 4. 29. 公布) (1973. 7. 21. 改正)

第6條 (輸出入의 許可 또는 承認) 輸出品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자는 輸出(輸入)하려는 바에 對한 海關長官의 許可 또는 承認을 受하여야 한다. 許可 또는 承認은 海關法의 一部를 變更하고자 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第1項의 規定에 對한 許可 또는 承認의 有效期間에 對하여는 大總領事로 定한다.

② 輸出品을 輸出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자는 第2項의 規定에 對한 許可 또는 承認의 有效期間 내에 稅關長官에 그 輸出 또는 輸入의 申請을 하여야 하며, 그 有效期間 내에 輸出代金을 納款하거나 輸入代金을 納付하여야 한다.

第10條 (擔保制度) 海關長官은 輸出品을 輸出 또는 輸入할 자가 하는 자에 對하여 當該 輸出 또는 輸入의 履行을 保證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總領事에 對하여는 법에 對하여 保單을 提出하거나 其他의 擔保를 提供하게 할 수 있다.

① 第1項의 경우에 當該 輸出品의 輸出 또는 輸入이 履行되지 아니한 때에는 大總領事에 對하여는 법에 對하여 그 保單은 國庫에 沒收된다. 然し, 輸出入業者의 責任에 對한 理由는 理由로 인하여 當該 輸出 또는 輸入이 履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4條 (輸出入의 特別) 第3條 및 第6條 外의 第13條의 規定은 다음 各條의 1에 對하는 때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商品の数量・品質規格 기타 特別規定이 加하는 貨物은
特別 規定 輸入許可가 必 要.

○ 무역거래법 시행령(국령 1972. 4. 4. 제2379호)
(국령 1973. 7. 1. 제2495호, 1976. 5. 19. 제2975호)

제16조 (수입의 특례) 법 제14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입상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2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발행하는 유네
스코 주관의 프로그램으로 출판되는 물건.

休業한 製造所를 再開한 때 또는 製造管理者 기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하는 事項에 變更이 있을 때에는 그 廢業·休業·再開 또는 變更이 있는 날로부터 20日 이내에 이를 保健社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2條의 2 (準用) 小分業에 관하여는 第27條 내지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에는 "製造業者"를 "小分業者"로, "製造"를 "小分"으로 본다. <新設 1971.1.13. 法 2279>

第33條 (藥局製劑의 製造) ①藥局開設者가 藥局製劑를 製造하거나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醫療機關의 調劑室에서 製劑를 製造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製造하고자 하는 品目을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1971.1.13. 法 2279>

②削除 <1965.4.3. 法 1694>

③藥局製劑 및 調劑室製劑의 範圍, 調劑室의 施設 기타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1971.1.13. 法 2279>

④削除 <1965.4.3. 法 1694>

⑤削除 <1965.4.3. 法 1694>

第2節 醫藥品등의 輸出入業

第31條 (醫藥品등의 輸出入業의 許可) ①醫藥品등의 輸出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は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를 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도 또한 같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は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基準에 의하여 必要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醫藥品등을 輸出入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마다 保健社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④第1項後段의 規定은 前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26條第5項 및 第6項·第23條 내지 第32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등의 輸出入業의 許可를 받은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에 "製劑 및 生産"을 "輸出入"으로 "承認"을 "許可"로 "製造所"를 "販賣所"로 한다. <改正 1971.1.13. 法 2279>

⑥醫藥品등의 輸出入業을 하고자 하는 者は 醫藥法에 依하여 所定의 許可를 받은 후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1971.1.13. 法 2279>

第3節 醫藥品등의 販賣業

第35條 (醫藥品販賣業의 許可) ①藥局開設者가 아닌 者가 醫藥品을 販賣하거나 販賣

3.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변화가 큰 의약품은 수시로 자가시험을 행하거나 검정기관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적당한 것으로 판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당해제품을 자진하여 회수하는 동시에 이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4. 의약품등(의료용구 및 위생용품을 제외한다)의 용기는 당해품목용으로 제조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계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새관을 사용할 것.

②제 1항의 경우에 화장품원료중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검사를 필한 원료는 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자가시험은 이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는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약품등의 생산실적과 수출입 실적보고) 법 제31조제 2항 및 제34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는 매분기말 현재의 그 생산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도제사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약품 등의 수출입업자는 매분기말 현재의 그 수출입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2호의 2 서식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사항) ①법 제1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그 신청과 동시에 수출입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2호 내지 제 4호의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자 등록증의 사본
 2. 제14조제 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기술자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자에 관한 제12조제 3항제 4호의 서류
 3. 수출입업무를 관리하는 약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 관리약사가 법 제 4조제 2호 제 3호·제 5호 또는 제 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그 선원증명서
 4.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등의 수출입의 허가 또는 약품별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약품등의 수출입업허가대장과 허가증) 보건사회부장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출입업허가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의 수출입업허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1. 허가번호와 허가년월일

48 약사법시행규칙

주④

- 2. 수출입업자의 본적·주소·성명과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본적·주소·성명과 생년월일)
- 3. 영업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법인인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수출입업무를 관리하는 약사의 본적·주소·성명과 생년월일(수출입업자 자신의 수출입업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의약품등의 수출입품목 허가신청)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출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회원수출신청장 사본
 - 2.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3. 거래상대자가 속하는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공관장이나 그 국가의 관공서 또는 상공회의소가 확인한 계약서(국내에서 체결된 경우에는 거래상대자가 속하는 국가의 주한 외국공관장이나 국내공증인이 공증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수입품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그 매도환약서와 신청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신약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임상성적서와 관계문헌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허가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 4 장 의약품 등의 판매업

제21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①법 제35조제2항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식제
- 2. 법 제1조제2호·제3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3. 약제
- 4. 사진(신청전 3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2매
- 5. 한약업사시험 합격통지서의 사본
- 6. 영업소의 소재지의 약도와 그 영업소의 구조개요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업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유네스코 쿠폰 輸入에 関한 賈疑

◦ 賈疑要旨

- 貿易去來法上 輸入許可를 要하지 아니한 유네스코 쿠폰으로 医薬品을 輸入한 경우 藥事法에 의한 許可를 要하는 旨.

◦ 回答

- 許可 要.
- 理由

- 藥事法 第34條는 貿易去來法에 對한 特別法 이므로 医薬品輸入에는 藥事法도 適用

※ 關係條文

藥事法 第34條

• 第3項

- 医薬品輸入은 保健部長官의 許可를 받도록 定함

• 第6項

- 貿易去來法上 第次後에 第3項에 의한 許可를 받도록 定함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963. 4. 27] _[法律第1335호]

改正 1974. 12. 24 法律第2711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大韓民國은 國際聯合敎育科學文化機構(이하 "유네스코"라 한다)가 國際聯合의 基本精神에 입각하여 世界 諸人民間의 無知와 誤解 및 貧困을 克服하여 人間의 마음속에 世界 平和의 礎石을 마련하며 人類의 福利增進에 至大한 貢獻을 하고 있음을 높이 評價하고 또한 大韓民國이 유네스코에 加盟함으로써 얻은 國際的地位에 鑑하여 이 崇高한 유네스코 活動에 大韓民國政府와 國民이 積極的으로 協力하여 敎育·科學 및 文化活動을 통하여 國際聯合憲章·유네스코憲章 및 世界人權宣言의 精神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法을 制定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유네스코活動"이라 함은 유네스코의 目的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活動을 말한다.

第2章 유네스코活動

第3條 (유네스코活動의 目標)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유네스코

活動은 國際聯合의 基本精神에 입각하여 유네스코憲章과 유네스코總會의 決議에 따라 教育·科學 및 文化를 통하여 嶄新한 國際的知識과 公正한 國際的理解를 全國民에게 普及시키는 동시에 活潑한 國際的交流를 통하여 國際間의 理解 및 親善과 協力を 促進함으로써 民族文化의 暢達·世界平和의 확립 및 人類의 福利增進에 寄與함을 目標로 한다.

第4條 (유네스코活動에 관계있는 國際機構)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유네스코活動은 다음의 國際機構 및 團體와 緊密한 協力下에 수행되어야 한다.

1. 유네스코.
2. 國際聯合.
3. 國際聯合의 各 專門機構.
4. 유네스코加盟國의 政府.
5. 유네스코加盟國의 國內委員會.
6. 유네스코活動에 관계있는 國際團體.
7. 유네스코活動에 관계있는 유네스코加盟國內의 團體.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유네스코活動)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活動을 하는 외에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에 積極 協助

1. 유네스코常任政府代表 및 유네스코總會에 派遣할 政府代表의 選定에 관한 事項.
2. 유네스코總會에 제출할 議案 및 同 總會에서의 議案에 관한 事項.
3.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國際會議에의 參加 및 그 事後處理에 관한 事項.
4.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條約·協定 기타 國際協約의 締結에 관한 事項.
5.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法令의 立案 및 豫算의 編成에 대한 基本方針에 관한 事項.
6. 國家가 행하는 유네스코活動의 實施計劃에 관한 事項.
7.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國際的協力에 대한 基本方針에 관한 事項.
8. 地方自治團體 또는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에 대한 國家의 協力과 援助에 관한 事項.
9. 유네스코總會 기타 유네스코活動에 관계있는 國際機構로부터의 援助募入에 대한 基本方針에 관한 事項.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事項.

②委員會는 前項의 事項외에 다음의 事項을 所管한다.

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必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에 대하여 財政的 援助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유네스코韓國委員會와 緊密한 連絡을 하여야 한다

第6條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 國民에 의한 유네스코活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유네스코韓國委員會의 指導下에 國內의 教育·科學 및 文化界의 實情을 充分히 斟酌하여 유네스코憲章과 大韓民國의 유네스코活動의 基本方針 및 事業計劃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第3章 유네스코韓國委員會

第7條 (委員會의 設置) 유네스코憲章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大韓民國에 있어서의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建議·企劃·調査·連絡 및 普及에 관한 事項을 수행하기 위하여 文敎部長官管掌下에 유네스코韓國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第8條 (所管事項) ①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調査·審議하여 關係部長官에게 建議하거나 그 諮問에 응한다.

1. 유네스코活動에 관계있는 國內의 各 機關 및 團體, 第4條의 國際機構 및 團體와의 連絡과 情報交換.
2. 유네스코活動에 必要한 資料의 蒐集과 調査·研究.
3. 유네스코의 目的과 活動을 國內에 宣傳·普及하기 위한 事業의 推進, 出版物의 發刊 기타의 啓蒙·普及活動.
4. 地方自治團體 또는 民間團體나 個人에 대한 유네스코活動에 관한 建議·指導와 協助.
5. 유네스코會館의 管理運營 (新設 74-12-24 法2711)

第9條 (關係部長官과의 관계) ①委員會가 前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部長官에게 建議하였거나 그 諮問에 응하였을 경우에 그 關係部長官이 文敎部長官이 아닌 때에는 그 結果를 文敎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委員會는 對外事務를 處理함에 있어서 그 事務가 國家의 對外政策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外務部長官과 緊密히 連絡하여 協助을 받아야 하고 外務部長官은 委員會의 對外事務處理에 대하여 必要한 便宜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10條 (構成) ①委員會는 60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委員(委員長·當然副委員長 및 事務總長인 委員을 除外한다)은 다음 순號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執行委員會의 銓衡 및 委員會의 추진을 거쳐 文敎部長官이 委
囑한 者가 된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하는 者는 執行委員會의 銓
衡 및 委員會의 추진을 要求지 아니한다. <改正 74.12.24 法2711>

1. 教育·科學·文化·弘報關係分野의 機關 또는 團體의 信任
代表 33人 이내.
 2. 教育·科學·文化·弘報關係分野의 權威者 11人 이내
 3. 國會議員중에서 國會議長이 指名한 者 6人 이내.
 4. 行政府 관계 公務員 4人 이내.
- ③委員의 銓衡과 委囑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文敎部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委員長 및 副委員長) ①委員會에 委員長 1人과 副委員
長 5人을 둔다. <改正 74.12.24 法2711>

②委員長은 文敎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文敎部次官·外務
部次官·文化公報部次官·科學技術處次官 및 委員중 總會에서
選任된 者 1人이 된다. <改正 74.12.24 法2711>

③委員長은 會務를 統理하며 委員會를 代表하고, 副委員長은 委
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
한 副委員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12條 (委員의 任期) ①委員(委員長·當然職副委員長 및 事務
를 둔다. <改正 74.12.24 法2711>

13條 (總會) ①總會는 委員會 全員으로 構成한다.

②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며 定期總會는 年1回, 臨時
總會는 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委員 10人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 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16條 (總會의 機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한다.

1. 第8條에 規定된 事項.
2. 委員會의 豫算案과 事業計劃.
3. 委員會의 決算報告와 事業實績報告.
4. 選任하는 副委員長 및 執行委員會 委員의 選舉.
5. 執行委員會 또는 委員長이 附議한 事項.
6.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17條 (總會의 定足數) ①總會의 議事は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
석과 출석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可否同數인 경우
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②委員長은 總會의 議長이 되며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한 副委員長이 議長이 된다.

18條 (執行委員會) ①執行委員會는 委員會의 委員長·副委員
長 및 事務總長과 總會에서 互選한 10人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總長인 委員을 除外한다)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그러나, 再
任할 수 있다. <改正 74.12.24 法2711>

②委員에 缺員이 생겼을 때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補闕委員을 委囑하여야 하며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13條 (委員의 缺格事由等)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委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產者와 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執行이 終了되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②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解職한다.

1. 前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가 발생하였을 때.
2. 機關이나 團體의 一定한 職位에 있음으로 인하여 就任된 者
가 그 職에서 떠났을 때.
3. 心身의 障礙로 職務遂行이 不可能하게 될 때.
4. 職務上의 不正行爲 기타 義務違反으로 委員의 威信을 損傷
한 때.

第14條 (委員會의 機關) 委員會에 總會·執行委員會外 事務處

②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各자 執行委員會의 委員長과
副委員長이 된다.

③執行委員會는 定期會와 臨時會로 하여 定期會는 年3月에 1回,
臨時會는 執行委員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執行委員
5人이상의 要求가 있을 때에 執行委員長이 이를 召集한다.

④執行委員長은 執行委員會의 議長이 되며 執行委員長이 事故
가 있을 때에는 執行委員長이 指名한 副委員長이 議長이 된다.

第19條 (執行委員會의 機能) 執行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決定한다.

1. 總會에 附議한 議案의 作成에 關한 事項.
2. 總會에서 議決한 事項의 執行計劃과 그 實施의 監督에 關한
事項.
3.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
4. 委員의 銓衡銓衡에 關한 事項.
5.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項.

第20條 (分科委員會) ①執行委員會에는 分科委員會를 둘 수 있
다.

②分科委員의 組織과 職務에 關한 事項은 第25條의 規定에
依한 遵從規則으로 정한다.

第21條 (事務處) ①事務處는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한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과 기타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事務總長은 執行委員會의 提請으로 委員長이 任命한다.

④事務總長의 任期는 4年으로 한다. 그러나, 再任할 수 있다.

⑤事務處 職員의 報酬 및 事務總長이외의 職員의 資格과 任免에 관한 事項은 第25條에 의한 運營規則으로 정한다.

第22條 (事務總長의 職務) ①事務總長은 委員長의 指揮·감독을 받아 事務處의 事務를 掌理한다.

②事務總長은 委員會의 委員를 請한다.

第23條 (豫算과 決算) 委員會의 豫算은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決算은 文敎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24條 (보고) 文敎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務執行事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第25條 (運營規則) ①委員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會의 運營에 관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則은 文敎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附 則

本法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③이 法 施行후 最初로 召集된 委員會의 委員의 銜衡은 教育·科

學·文化界의 人士중에서 文敎部長官이 指名한 15人이하의 銜衡委員이 이를 행하고 이 法 施行후 最初의 召集은 文敎部長官이 召集한다.

③이 法 施行 당시의 유네스코韓國委員會 事務處 職員은 이 法에 의하여 任命된 것으로 한다.

④이 法 施行 당시의 유네스코韓國委員會가 행한 모든 行爲는 이 法에 의한 委員會가 한 것으로 한다

附 則 (74.12.24 法271)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후 3)

국고 1447-049

유네스코 (70-3406)

1981. 4. 6.

수신 보건사회부장관

제목 의견 의견

1. 제 1447-47532 (81. 4. 2)

2. 유네스코 쿠폰에 의하여 수입되는 진단용 시약에 관하여 이탁와 같
이 당부 의견을 취진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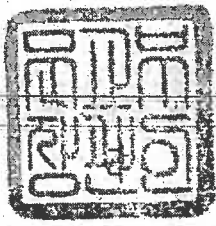
가. 일부 종합병원에서 실험실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약은 무역거래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46조 제2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쿠폰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수입
자등 승인 품목의 수입도 쿠폰으로 가능하며

나. 유네스코 쿠폰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시약은 분석용
시약, 진단용시약 등 제반 시약을 포함하는

첨부 : 관 계법령 발췌본 사본 1부. 끝.



보건사회부		결재	약정국장	시 교 부 장
접수 일시	1981 4 9 시 문	지		
접수 번호	26446호	시		장
부서	보건국	사		
		보건국발서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지 교신부장 등이 양 최 전 결		



무역거래법

제 6 조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

1.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허가는 승인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 지킬 때, 의무도 면한 것이다.
2. 제 1항의 2항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3.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유효기간 내에 신권잠언계 그 수출 또는 수입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이 수출 또는 수입을 회산하거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 (수출입의 특례)

제 3조 및 제 6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품의 기본 광고용 물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2. 외교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출국 또는 입국할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본인이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별도 송부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할 때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 45조 (수입의 특례) 법 제 14조 제 1호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23 항 상륙

24.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에서 발행하는 유네스코 보고서 그리고 그 밖으로 수송되어 반입되는 물품.

기안번호 11752

기안용지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분류기호 문서번호	수급 1117-	(전화번호) 70-3723
제출일자	1981. 1. 30	
보조기관	국장	담당관
기안책임자	행정사무관 강창호	주수급담당

경유 수신 조 제 유
 문고부장관
 유네스코주펀 운영에 관한 의견조력

1. 의약품인 진단용 시약의 수출업무에 참고코자 다음 사항을
 조회 하오니 귀경토의견을 1981. 1. 6 까지 당부(약품수급담당관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부 종합병원에서 의약품인 진단용 시약을 국내외 파생물
 용하여 직접 유네스코주펀으로 수입할때 약사법 제 34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

등 수입품목 아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바, 무법법
 에 의한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규정에 불구하고 유네스코주펀에 의하여 수입

자동승인품목으로 수입 가능 하다면 그관계법준거.

2) 유네스코주펀에 관한 규정 제 16조 제 3항 규정에 의하

정서
 관인
 발송
 145

100mm x 268mm (2급인쇄용지 60g/m²)

의약

"시약은 분석용 시약, 진단용 시약등 제반시약종류 를 포함하는지 여부.

(제 2안)

수신 : 경기도 인천시 남구 (주) 이

제목 :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1. 귀하가 1987. 3. 24자 당부에 제출하신 의약품 수입허가 취득
여부 집의서는 관계기관과의 검토로 인하여 상당기간 처리지연되겠기 우선
통보합니다.

(제 3안)

수신 : 민원사무총재관

제목 : 민원서류 처리지연 통보

1. 접수번호 제129293호 (87. 3. 24)와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수입허가 집의서는 관계기관과의 검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처리지연되겠기 우선 통보합니다. 함.

한글시약주식회사

한시: 87-03-18

763-0581

1981. 3. 18

수신: 보건사회부

참조: 약품 수입국

제목: 의약품 수입허가 적용 여부

피사에서는 영문 입상의 필요로 하는 진단용 시약을 국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로서, 국부의 수입허가 승인 신청서와 외국 원용장 제출하여 수입하고 있는 이 경우 당국에서는 영문 진단용 시약을 국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I/C 절차로 수입할지 국부의 입상기준에 준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관여 유무에 따라 적속되는 것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김남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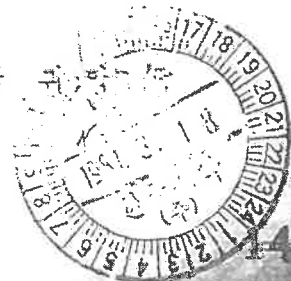


주소: 인천시 남구

상호: 조시회사

대표이사: 이

보건사회부장



147

유네스코 쿠폰 輸入에 관한 質疑

- 保 社 部 -

一部 綜合病院에서 臣藥品에 該當되는

診斷用 試藥의 輸入은 藥事法 第34條

第3項 規定에 依한 輸入許可는 必要로

하오나, 國內 外 商을 通하여 유네스코

쿠폰으로 輸入하는 경우 藥事法의 排除에

依한 合法的인 輸入 節次에 該當되는지 否.